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인재개발원 종합감사 -

2021. 12.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권고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	0	0	1	162	0	0	0	0
1	□ □ □ □ □	□ □ □ □ 위탁업체 선정 및 감독 관련		1							
2	□ □ □ □ □	□ □ □ □ 임대료 산정 부적정		1							
3	□ □ □ □ □	□ □ □ □ 급식비 계좌 운영 관련		1							
4	□ □ □ □ □ □ □ □ □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1							
5	□ □ □ □ □	휴대용 통신기기 사용요금 집행 부적정	1			1	162				
6	□ □ □ □ □	상품권 관리 및 교육생 포상 관련		1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위탁업체 선정 및 감독 관련  
소 관 청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에서는 2019년부터 □□□□을 급식업체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 「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하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에서는 행정재산인 구내식당을 관리위탁하며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에 따른 원가를 계산하여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입찰 하여야 했으며, 관리수탁자가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위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에서는 2019. 1. 14. 및 2021. 4. 30. 경상북도인재개발원(구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 운영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행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하여 2019. 2. 11.□□□□□과 2021. 5. 31. □□ □□□□□□□□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2019. 2. 11. □□□□□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 위탁관리운영 계약 체결한 이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재산이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임대료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에서는 행정재산인 □□□□을 □□□□(□□□)에 사용·수익허가 하여 □□□□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1조 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대부재산의 평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천분의 4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대부로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 총 공용면적×사용·수익허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당해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부지 총공용면적×사용·수익허가 받는 건물면적/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따라서 인재개발원 □□□□□에서는 2019. 1. 1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하며 공용면적(건물 8㎡, 토지 102㎡)을 포함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했다.

[표] 관련규정에 따른 대부로 산정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재산평가액	대부면적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전용면적	공용면적
	16% 적용	4% 적용						
합 계	9,478,867	2,369,717	59,242,920					
건 물	959,090	239,772	5,994,312	31.09㎡	192,836		22.40㎡	8.69㎡
토 지	8,519,777	2,129,944	53,248,608	102.48㎡		519,600		102.48㎡

그런데 인재개발원 □□□□□에서는 2019. 1. 1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에 따른 추정가격을 작성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건물의 대부면적 31㎡(전용 22㎡, 공용 9㎡)와 토지의 대부면적(전용 0㎡, 공용 102㎡)에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곱하여 재산평가액을 산정한후 대부요율을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고 추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9. 1. 7. □□□□□□□연구원에 임대료 산정을 의뢰(용역비 900천원 지출)하여 제출받은 재산평정가격 16,018,566원에 대부요율 16%를 적용하여 2,562,970원을 추정가격으로 입찰 공고하고 2019. 1. 23. □□□□(□□□, 입찰금액 7,100,000원)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2019. 1. 29. 사용·수익 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급식비 계좌 운영 관련  
소 관 청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생이 입교 당일 현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7년 □□□□ 식비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회계법」 제20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에서는 2017. 7. 7. □□□□ 식비 지급방법 개선계획에 따라 교육생의 □□□□ 이용에 따른 급식비를 소속 기관으로부터 납부받으며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수납하여야 했으며,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 하여야

했고,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에서는 2017. 7. 7. □□□□ 식비 지급방법 개선계획에 따라 본청 및 시·군 등 교육생의 □□□□ 이용에 따른 급식비를 소속 기관으로부터 납부받으며 수입금출납원이 아닌 시설관리팀에서 급식비 전용 출납계좌를 개설하여 급식비를 수납하고 있으며 수납한 급식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 세출예산으로 사용하여 □□□□ 위탁업체에게 지급하는 등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수납 및 지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재산인 □□□□ 이용에 따른 급식비 납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소 관 청 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인재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 1. 지출 증빙서류 미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4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12. 24. ‘식사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해당부서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미비내용
□□□□□	2020.12.2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식사 제공	591,500	5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한 명단 미 첨부

### 2.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4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이나 물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목적 외로 사적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이 감사일 현재까지 부존재하여 [표 2]와 같이 관리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54건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있다.

[표 2]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 내역

(단위 : 원)

연번	해당부서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1	□□□□□	2018. 2.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280,000
2		2018. 2. 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설 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396,000
3		2018. 9.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문품 구입	164,100
4		2018. 9.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342,000
5		2018. 9.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456,000
6		2018. 9.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석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869,440
7		2018. 9.1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념품 구입	200,000
8		2018.11.1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수능기념품 구입제공	28,000
9		2018.12.2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말 직원 격려품 구입 제공	468,000
10		2019. 1.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450,000
11		2019. 1.2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360,000
12		2019. 1.2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설 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849,800
13		2019. 1.2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문품 구입	198,300
14		2019. 5.2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	126,000
15		2019. 7.1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초복 직원 격려품 구입	71,600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휴대용 통신기기 사용요금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에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 통신기기의 요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휴대전화 사용요금 집행 부적정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의결(2016. 9. 26.) 「공용 휴대폰 요금지원 부패결정」에 따라 경상북도 정보통신과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운영기준 개선 계획」<sup>1)</sup>을 수립하여 시·군 및 도 소속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통보하였다.

「업무용 휴대전화 운영기준 개선 계획」에 따르면 통신요금 지원대상으로 본청은 국장급 이상,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기관장 및 소장으로 정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기본료,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문자이용료 등 100천원 이내로 실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 제외 항목으로는 소액결제, 단말기 할부금, 업무와 무관한 부가서비스, 데이터통화료(정액 요금제 초과 사용분), 사적 용도의 국제통화사용료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현 □□□□□□)의 통신요금 지원 시 100천원의 지원한도 금액의 초과 여부와 통신요금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내역의 사적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집행을 결정했어야 했다.

연번	해당부서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내용	지출금액
16	□□□□□	2019. 8.2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석 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760,000
17		2019. 8.2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417,600
18		2019. 8.2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문품 구입	152,160
19		2019. 9.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120,000
20		2019. 9.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300,000
21		2019.10.3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	50,000
22		2019.11.1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수능기념품 구입 제공	24,000
23		2020. 1.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문품 구입	201,400
24		2020. 1.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287,100
25		2020. 1.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78,300
26		2020. 1.2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52,200
27		2020. 1.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150,000
28		2020. 1.2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설 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817,000
29		2020. 2.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 특산품 구입	49,000
30		2020. 6.1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지급	50,000
31		2020. 7.16.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초복(7.16.) 직원 격려품 구입	79,200
32		2020. 8.2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 특산품 구입	49,000
33		2020. 9.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 특산품 구입 제공	450,000
34		2020. 9.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석 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880,000
35		2020. 9.1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361,000
36		2020. 9.2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문품 구입	132,640
37		2020.10.1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 특산품 구입	64,000
38		2020.12. 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	50,000
39		2021. 1.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산품 구입	300,000
40		2021. 1.2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528,000
41		2021. 1.2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설 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860,000
42		2021. 1.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400,000
43		2021. 1.2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문품 구입	178,700
44		2021. 4.15.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출산 직원 격려를 위한 물품 구입	50,000
45		2021. 7. 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초복(7.11.) 직원 격려품 구입	124,000
46		2021. 9. 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석 명절 격려품 구입 제공	966,000
47	2021. 9. 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462,000	
48	2021. 9.1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630,000	
49	2018.10.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품 구입	44,200	
50	2019. 9.1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특산물 구입	160,000	
51	2020. 1.2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165,000	
52	2020. 9.2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400,000	
53	2021. 2.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격려품 구입 제공	470,900	
54	2021. 9.1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격려품 구입 제공	814,900	

### 조치할 사항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 정보통신과-757(2017.1.17.)「업무용 휴대전화 운영기준 개선 알림」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2개월간 □□□□□□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100천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초과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출하였고, 2019년 7월의 경우에는 □□□□□□이 장기 재직휴가 기간 중 사용한 해외로밍서비스 이용료를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휴대전화 사용요금 집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급월	지출금액	초과금액	사용자	비고
계			185,018		
1	2018. 2월	111,540	11,540		
2	2018. 3월	111,540	11,540		
3	2018. 4월	122,180	22,180		
4	2018. 5월	111,540	11,540		
5	2018. 6월	111,770	11,770		
6	2018. 7월	112,420	12,420		
7	2018. 8월	111,670	11,670		
8	2018. 9월	112,640	12,640		
9	2018. 10월	114,150	14,150		
10	2018. 11월	112,640	12,640		
11	2018. 12월	112,640	12,640		
12	2019. 1월	117,560	17,560		
13	2019. 7월	58,290	22,728(해외로밍)		

## 2. 미사용 태블릿PC 통신요금 지출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에서는 “중이없는 전자회의 구현”에 따라 경상북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여 배부한 간부회의용 태블릿PC의 월 통신요금 29,700원을 납부하여 사용하던 중 2020년 1월 통신요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Wi-Fi전용 신규 태블릿PC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기존 태블릿PC의 회선을 해지하여 불필요하게 낭비 되는 예산의 지출을 방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Wi-Fi전용 신규 태블릿PC 구입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태블릿PC의 회선을 해지하지 않고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개월간 653,400원의 통신요금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 ① 초과 지급된 휴대전화 사용요금 162,29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하시고, 미사용 태블릿PC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상품권 관리 및 교육생 포상 관련  
소 관 청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에서는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을 구매·관리하고 있다.

### 1. 상품권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의 자필 서명을 받거나,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 등에게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수령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서 관리하거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대장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구입 및 배부내역 등의 내용만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매년 공개되어야 할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연도별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단위 : 천원, 매)

연도	구매금액	구매수량	사용수량	잔량	비고
2019	21,790	2,179	2,179	0	
2020	17,020	1,702	1,096	606	
2021	7,910	791	305	1,092	

### 2. 상품권 배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학생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고,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는 매년 교육생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성적 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에게 포상과 시상품인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신규 임용자과정과 중견리더양성과정의 성적우수 교육생에게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라 과정별 3명 이내로 시상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3명(우수 1명, 장려 2명)을 추가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 ① 앞으로 「경상북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상품권을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 ②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선정, 필요 시 학칙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